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방자치단체에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
■ 이은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6157호)

2024. 5.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지방자치단체에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안 제3조제4항 신설) ...	3

I. 제안경위

2024년 1월 3일 이은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나 노동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임금체계, 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사관계 의제는 물론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 의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지난 몇 년 동안 관할 지역 산업안전 예방(「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노동조합 설립(「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등 유관 법률에 지자체 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지자체에는 노동담당 전담 부서들이 부재하여 정책 수립과 이행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문제, 특수

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이중노동시장 구조의 취약노동 문제와 관련된 교육과 기초고용질서 준수 등 예방적 사업을 위해서라도 지자체 노동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노동정책담당자 지정 의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동정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지방자치단체에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안 제3조제4항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노동정책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노동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노동정책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노동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u>
<u>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⑤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전문인력의 자격 등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현재 다수의 노동관련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동 관련 책무가 명시되어 있으며²⁾ 이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국 또는 과·팀의 형태로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이 일관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³⁾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노동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노동정책담당 공무원 지정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정책에 관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각종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의 상황에 부합하는 노동정책의 수립 및 집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신의 고유한 재량으로 자신의 내부조직을 형성, 변경,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인 ‘자치조직권’을 가지고 있으며,⁴⁾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

1) 자구정리 : 제4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자격

2)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지자체에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 요구」, 2018. 5. 15.

4) 김희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

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자치조직권을 인정하고 있고,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기준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한 행정기구 설치요건에 대해 일정 인원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계만을 규정할 뿐 행정기구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⁶⁾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유사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풍수해보험법」에 관련 전담부서를 운영할 의무를 부여한 사례를 찾을 수 있으나,⁷⁾ 지방자치단체에 특정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의무화한 다른 입법례는 찾기 어려움.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 설치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노동 관련 전담부서 설치에 해당 지자체의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 판단에 따라 설치할

연구』 22권 4호, 한국법정책학회, 2022, 35면.

5)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7) 「풍수해보험법」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에 따른 풍수해보험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수 있도록 재량 규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특정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자치조직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 여건에 따라 개별적·자율적 판단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35